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편〉

■ 김병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011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1
IV . 참고사항	2
V . 검토의견	3
1.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편(안 제8조 등)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병기의원 등 166인

나. 발 의 일 : 2025. 9. 16.

다. 회 부 일 : 2025. 9. 17.

II. 제안이유

공공기관 정책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대표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자문위원회에서 행정위원회로 개편하여 소관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는 재정경제부장관과 민간위원의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하며 상임위원을 신설하는 등 실질적인 운영 개선을 하고자 함.

III.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설치함(제8조).

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재정경제부장관과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하며, 민간위원 수를 11인에서 14인으로 확대함(제9조).

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둠(제10조의2).

IV.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기위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V. 검토의견

1.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편(안 제8조 등)

현 행	개 정 안
○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 위원장: <u>기재부장관</u> - 위원: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 <u>11인</u> <신 설>	○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 위원장: <u>재정경제부장관 및 민간위원 1인으로 총 2인</u> - 위원: 정부위원, 민간위원 <u>14인 및 공운위사무처장</u> - <u>사무처 설치</u>
○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성격: <u>자문기구</u>	○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성격: <u>행정기구</u> - 기존 <u>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로 이관</u>

현행법¹⁾은 공공기관의 지정·지정해제, 유형 변경이나 경영공시 및 기능조정,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임명 및 해임·해임 건의, 경영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하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지정, 지정해제와 변경지정
2.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기관의 신설 심사
3. 제11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4.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시의무 등의 위반에 대한 인사상 조치 등
5.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등
6.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혁신지원 등
7.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의 선임비상임이사 임명
8.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임명 등
9. 제33조에 따른 보수지침
10. 제3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제52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에 대한 해임이나 해임 건의 등
11.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비상임이사·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 등
12.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등
13.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지침
14.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의 적정성의 점검과 개선
15.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명단의 공개
16. 제52조의5제1항에 따른 합격취소등
17.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적 평가, 보수지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 하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두고 있음. 또한 현행법²⁾은 기획재정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공운위를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면서, 민간위원은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기존에 기획재정부장관의 자문기구의 성격이었던 공운위를 행정기구로 변경하며 공공기관 지정·변경·해제 등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이었던 사무들을 공운위로 이관하려는 내용임. 또한, 이러한 공운위의 구성을 위원장은 민간위원 1인을 포함하여 총 2인의 공동위원장 체제로 변경하고, 민간위원의 수를 14인으로 확대하며, 공운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설치하고 사무처의 장 역시 공운위 위원으로 포함하려는 내용임.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장이 된다.

1. 국무조정실의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1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무기관의 차관·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4.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서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사람

②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우선, 개정안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행정기구로 전환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로 이관하도록 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기존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이었으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로 이관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공공기관 지정·유형구분·변경 지정·지정해제(제4조·제5조·제6조), 공공기관 신설에 대한 심사 및 통보(제7조), 경영공시 사항 결정(제11조), 통합공시 및 이를 위한 자료 요청(제12조제1항 및 제2항), 허위공시자에 대한 인사조치 요청(제12조제3항), 고객만족도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제13조), 기관통폐합·기능재조정·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 수립(제14조제1항 및 제2항), 기관통폐합 등에 관한 계획 실시 점검 및 필요조치 요구(제14조제3항 및 제4항), 공공기관 혁신 지침 제정 및 진단 등(제15조), 공기업 장과 계약 체결·변경 시 미리 협의(제31조제3항 및 제4항),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 평가(제31조제6항), 감사기준·보수지침 제정(제32조·제33조), 공기업·준정부기관 비상임이사·감사·감사위원 직무수행실적평가 실시 및 국회 제출(제36조제1항·제52조의2제2항), 직무수행실적평가 기준 및 방법 제정(제36조제3항),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확정 및 변경시 보고 주체(제40조제7항), 공기업 운영계획 제출 주체(제42조제3항), 공기업·준정부기관 중장기 경영목표 수립 및 변경시 제출 주체(제46조), 경영실적보고서 제출 주체(제47조), 경영실적평가 실시 및 이를 위한 자료 요청·경영실적평가단 구성(제48조제1항·제3항·제6항), 경영실적평가 결과 및 성과급 수정, 인사상 조치 요청(제48조제4항), 경영실적평가 결

과의 보고 및 해임 건의·해임 요구 및 인사상·예산상 조치 요청(제48조제8항·제9항),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연차보고서 작성 및 공표(제49조), 경영지침 제정(제50조),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제51조), 공기업·준정부기관 출연·출자시 사전협의 주체(제51조의2), 공공기관 임원의 비위행위 의심에 대한 수사 의뢰(제52조의3), 채용비위 행위자 명단 공개(제52조의4), 채용비위 관련자의 합격취소등 요청(제52조의5), 인사감사 실시 및 자료요청, 인사상조치 요구(제52조의6)

일반적으로 위원회는 「정부조직법」³⁾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는 위원회와 행정기관 소속으로 설치되는 위원회로 구분되며, 행정기관 소속으로 설치되는 위원회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지여부에 따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⁴⁾에

3)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처·청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
5.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6.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7.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우주항공청
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새만금개발청

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① 「정부조직법」 제5조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이하 “행정위원회”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기존 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獨自性)이 있을 것
4. 업무가 계속성·상시성(常時性)이 있을 것

다른 합의제행정기관인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로 구분됨.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자문기구로서 주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였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자문위원회가 아닌 행정위원회로 전환하고, 공공기관 지정과 같은 행정행위(처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기관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한 권한을 직접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독립성을 제고시키는 것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음.

특히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에 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던 것과 달리 해당 권한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로 이관될 경우, 심의·의결기구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특성상 그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민간위원들의 전문성이 보다 크게 발휘되는 등 공공기관 운영의 민주성이나 전문성, 공공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심의·의결기구인 위원회라는 점에서 개정안의 심의·의결에 대한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전술한 바와 같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의결기구이므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행사하는 권한은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

② 행정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등”이라 한다)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소관 사무(안 제8조의25)와 심의·의결 사항(안 제8조의36)을 별도의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체계적으로 중복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해당 조문을 소관 사무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일부 조문에는 ‘심의·의결을 거칠 것’라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나, 일부 조문에는 해당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 기구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심의·의결을 거치는 것은 당연하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을 것임.

공동위원장 체제 도입 및 민간위원 수 확대 등과 관련하여는,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추가하고 민간위원 수를 확대하는 경우 공운위 회의에 있어서 민간위원의 의견이 더욱 폭넓게 반영될 수 있어

5) 제8조의2(운영위원회의 소관사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1. 공공기관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해석·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운영, 소위원회와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4. 공공기관의 지정, 유형 구분, 변경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5. 공공기관의 경영공시에 관한 사항
6. 공공기관의 고객현장과 고객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7.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및 혁신에 관한 사항
8.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과 보수 등에 관한 사항
9.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산, 회계와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10.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조직 운영과 정원·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11.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평가와 감독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제8조의3(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 17. (현행 제8조 각 호와 같음)

지므로 공운위 운영의 독립성이나 중립성, 전문성 및 민주성이 제고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다만, 1인 위원장 체제에서 공동 위원장 체제로 변경됨에 따라 위원장 간 의견이 상이할 경우 공운위 운영의 행정절차가 지연될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공운위 사무처는 공운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구임을 고려할 때 사무처를 관장하는 사무처의 장을 공운위 위원으로 포함하여 공운위 결정에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법체계적으로 적정한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은 공운위 사무처 조직에 관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에서 공운위 상임위원이 사무처장을 겸임하도록 할 경우 역시 사무처를 관장하는 사무처장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어 영향력이 과다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보임.

참고로, 위원회에 사무처를 두고 있는 금융위원회⁷⁾나 공정거래위원

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위원회의 구성) ① 금융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금융감독원 원장
3. 예금보험공사 사장
4. 한국은행 부총재
5.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금융 전문가 2명
6.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경제계대표 1명

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하 이 절과 제2절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하 이 절과 제2절에서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장의

회⁸⁾, 복권위원회⁹⁾ 등도 관련 법률에서 사무처의 장을 위원으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음.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제1항제5호의 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며, 제1항제6호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⑤ 위원장, 부위원장, 제1항제5호의 위원 및 제15조에 따른 사무처의 장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⑥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7조(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4명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또는 소비자분야에 경험이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1. 2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있었던 사람

3. 법률·경제·경영 또는 소비자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었던 사람

4. 기업경영 및 소비자보호활동에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밖의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補)한다.

④ 위원장·부위원장 및 제70조에 따른 사무처의 장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9)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4조(복권위원회의 구성) ① 복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제2호의 사람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2.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판사·검사 및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나.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다.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라.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공공기관) ① <u>기획재정부장관</u> 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공공기관) ① <u>제8조의 규정</u> 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u>기획재정부장관</u>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② ----- <u>제8조의</u> <u>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u> 는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① <u>기획재정부장관</u> 은 공공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① <u>제8조의</u> <u>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u> 는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u>기획재정부장관</u> 은 다른 법률에 따라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거나 기관 운영의 독립성, 자율성 확보 필요성이 높은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② ----- <u>제8조의</u> <u>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u> 는 ----- ----- ----- -----.

현행	개정안
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기획재정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관은 공기업으로 지정하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은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다. ④기획재정부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 1. 2. (생략) ⑤기획재정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타 공공기관 중 일부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⑥ (생략) 제6조(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	----- -----. ③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 ----- ----- ----- ----- -----. ④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 ----- -----. 1. 2. (현행과 같음) ⑤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 ----- ----- ----- -----. ⑥ (현행과 같음) 제6조(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

현 행	개 정 안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해제 또는 변경지정할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존의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함께 고시할 수 있다. ④ (생략) 제7조(기관 신설에 대한 심사) ① 주무기관의 장은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신설하고자 할 때에는 그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u>기획재정부장관에게</u> 그 기관 신설의 타당성에 대하여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u>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관 신설 및 재정지원 등의 필요성과 효과 등을 심사하고,</u> 그 결과를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생략)	----- ----- -----. ----- -----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기관 신설에 대한 심사) ① ----- ----- ----- ----- -----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 -----. 1. ~ 3. (현행과 같음) ② <u>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관 신설 및 재정지원 등의 필요성과 효과 등을 심사하여 심의·의결하고,</u> ----- ----- -----.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8조(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u> <u>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u> <u>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u> <u>경제부장관 소속으로 공공기관</u> <u>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u> <u>라 한다)를 둔다.</u>
<u><신 설></u>	<u>제8조의2(운영위원회의 소관사무)</u> <u>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소</u> <u>관 사무를 수행한다.</u> <u>1. 공공기관 정책 수립에 관한</u> <u>사항</u> <u>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u> <u>률의 해석·개정 및 운영에</u> <u>관한 사항</u> <u>3.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운영,</u> <u>소위원회와 자문단의 구성 및</u> <u>운영</u> <u>4. 공공기관의 지정, 유형 구분,</u> <u>변경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u> <u>사항</u> <u>5. 공공기관의 경영공시에 관한</u> <u>사항</u> <u>6. 공공기관의 고객현장과 고객</u> <u>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u> <u>7.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및 혁</u>

현행	개정안
<u>제8조(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하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 1. ~ 17. (생략) <u>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장이 된다.</u>	<u>신에 관한 사항</u> 8. <u>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과 보수 등에 관한 사항</u> 9. <u>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산, 회계와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u> 10. <u>공기업·준정부기관의 조직 운영과 정원·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u> 11. <u>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 평가와 감독에 관한 사항</u> 12. <u>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u> <u>제8조의3(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u> 1. ~ 17. (현행과 같음) <u>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현행	개정안
1. (생략) <u><신설></u>	1. (현행과 같음)
2. (생략)	2. <u>기획예산처차관</u>
3. <u>제2호</u>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무기관의 차관·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 (현행 제2호와 같음)
4.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 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서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u>기획재정부장관</u> 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u>11인</u> 이내의 사람	4. <u>제3호</u> ----- ----- -----
<u><신설></u>	5. ----- ----- ----- ----- ----- -- <u>재정경제부장관</u> ----- ----- <u>14인</u> ----- -----
<u><신설></u>	6. <u>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사무 처의 장</u>
<u><신설></u>	② <u>위원장은 제1항제5호의 위 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 과 재정경제부장관이 된다.</u>
<u><신설></u>	③ <u>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 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 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u>
② <u>제1항제4호</u> 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④ <u>제1항제5호</u> ----- -----

현행	개정안
연임할 수 있다.	-----.
③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은 공공기관의 자율·책임 경영체제 확립 및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그 양심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	⑤ 제1항제5호----- ----- ----- ----- -----.
④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될 수 있다.	⑥ 제1항제5호-----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⑤ 위원장은 제1항제4호의 규 정에 따른 위원이 제4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에게 해촉을 건 의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제1 호의 경우에는 해촉을 건의하 여야 한다.	⑦ 제1항제5호----- -----제6항----- ----- -----제6항제1호----- -----.
⑥ (생략)	⑧ (현행 제6항과 같음)
제10조(운영위원회의 회의) ①운 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하되,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제10조(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 ----- -----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 4호-----

현 행	개 정 안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은 위원장이 안건별로 지 명하고, 같은 항 제4호에 해당 하는 위원의 수가 회의 구성원 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 다. ② ~ ③ (생 략) ④ <u>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 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 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고위 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된다.</u> ⑤ <u>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⑥ (생 략) <u><신 설></u>	----- ----- ----- 제5호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u><삭 제></u> <u><삭 제></u> ④ (현행 제6항과 같음) 제10조의2(조직과 운영 등) ① <u>운 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u> ② <u>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운 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기구 의 조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11조(경영공시) ① ----- ----- -----.
제11조(경영공시)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 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현행	개정안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u>기획재정부장관</u>과 협의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부분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15. (생략) 16. 그 밖에 공공기관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u>기획재정부장관</u>이 <u>운영위원회의</u> 심의·의결을 거쳐 공시하도록 요청한 사항 ② ~ ④ (생략) 제12조(통합공시) ①<u>기획재정부장관</u>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공공기관이 공시하는 사항 중 주요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이하 이 조에서 “통합공시”라 한다)할 수 있다. ②<u>기획재정부장관</u>은 공공기관에 통합공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정	----- ----- ----- ----- <u>운영위원회</u>와 ----- ----- -----. 1. ~ 15. (현행과 같음) 16. ----- ----- <u>운영</u> <u>위원회</u>가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통합공시) ①<u>운영위원회</u>는 ----- ----- ----- ----- ----- -----. ②<u>운영위원회</u>는 ----- ----- ----- -----

현 행	개 정 안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공표할 수 있다.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 ① <u>기획재정부장관은</u>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u>운영위원회의</u>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기능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기관통폐합·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u>기획재정부장관은</u> 수립된 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 ① <u>운영위원회는</u> ----- 후 ----- 운영위원회는 ----- -----. -----.
② <u>기획재정부장관은</u> 제1항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 제5조제5항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의 성격 및 업무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u>운영위원회는</u> ----- ----- ----- ----- -----.
③주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계획을 집행	③----- -----

현행	개정안
하고, 그 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u>기획재정부장관에게</u> 제출하여야 한다. ④<u>기획재정부장관</u>은 제3항에 따른 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여 집행실태를 확인·점검한 후 필요한 때에는 <u>운영위원회</u>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활한 계획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주무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생략) 제15조(공공기관의 혁신) ① (생략) ②<u>기획재정부장관</u>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u>운영위원회</u>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련 지침의 제정, 혁신수준의 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 제5조제5항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 <u>운영위원회</u>에 ----- -----. ④<u>운영위원회</u>는 ----- ----- ----- ----- 심의·의결 ----- ----- ----- -----.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공공기관의 혁신) ① (현행과 같음) ②<u>운영위원회</u>는 ----- ----- - 위하여 ----- ----- ----- -----. ----- ----- ----- ----- ----- -----.

현행	개정안
제21조(선임비상임이사) ① (생략) ②선임비상임이사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다만, 시장형 공기업과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준시장형 공기업의 선임비상임이사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u>기획재정부장관</u> 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③ (생략)	제21조(선임비상임이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재정경제부장관</u> ----- ----- -----.
제24조의2(양성평등을 위한 임원임명 목표제) ①·② (생략) ③ 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목표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연차별 보고서를 <u>기획재정부장관</u>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24조의2(양성평등을 위한 임원임명 목표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u>운영위원회</u> 에 ----- -----.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① (생략) ② 공기업의 상임이사는 공기업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이 되는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현행	개정안
상임이사(이하 “상임감사위원”이라 한다)는 제4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 또는 <u>기획재정부장관</u>이 임명한다. ③공기기업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u>기획재정부장관</u>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④ (생략) ⑤공기기업의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u>기획재정부장관</u>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기관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공기기업의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u>기획재정부장관</u>이 임명한다.	----- ----- ----- <u>재정경제부장관</u>----- -----. ③----- ----- ----- ----- ----- <u>재정경제부장관</u>-----. ----- -----. 1. 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 ----- ----- <u>재정경제부장관</u>----- -----. ----- ----- ----- ----- <u>재정경제부장관</u>----- -----.

현행	개정안
⑥·⑦ (생략)	⑥·⑦ (현행과 같음)
제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제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준정부기관의 상임이사는 준정부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다른 법령에서 상임이사에 대한 별도의 추천위원회를 두도록 정한 경우에 상임이사의 추천에 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상임감사위원은 제4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 ----- ----- ----- ----- ----- ----- 재정경제부장관-----.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준정부기관의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u>기획재정부장관</u> 이 임명한다. 다만, 기관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업무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정부기관의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⑤----- ----- ----- ----- <u>재정경제부장관</u> ----- ----- ----- ----- ----- ----- ----- 재

현행	개정안
을 거친 사람 중에서 <u>기획재정부 장관</u>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⑥·⑦ (생략) 제31조(기관장과의 계약 등) ①·② (생략) ③주무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된 계약안에 따라 기관장으로 임명되는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되, 공기업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미리 <u>기획재정부 장관</u>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기관의 장은 기관장으로 임명되는 사람과 협의를 거쳐 계약의 내용이나 조건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안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기관장과 주무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계약의 내용이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주무기관의 장은 공기업의 장과 계약의 내용	<u>정경제부장관</u>----- -----. ⑥·⑦ (현행과 같음) 제31조(기관장과의 계약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윤 <u>영위원회와</u> ----- -. ----- ----- ----- ----- -----. ④----- ----- ----- ----- ----- -----.

현행	개정안
이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미리 <u>기획재정부장관</u>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생략) ⑥ <u>기획재정부장관</u>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의 실적을 재임중 1회 이상 평가할 수 있다. ⑦ (생략) 제32조(임원의 직무 등) ① ~ ④ (생략) ⑤ 감사는 <u>기획재정부장관</u>이 정하는 감사기준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이 경우 감사원은 <u>기획재정부장관</u>에게 감사기준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생략) 제33조(임원의 보수기준)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의 보수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u>기획재정부장관</u>이 운	----- <u>운영위원회</u>와 -----. ⑤ (현행과 같음) ⑥ <u>운영위원회</u> ----- ----- ----- ----- -----. ⑦ (현행과 같음) 제32조(임원의 직무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u>운영위원회</u>가 ----- ----- ----- ----- -. ----- <u>운영위원회</u>에 ----- -----. ⑥ (현행과 같음) 제33조(임원의 보수기준) ① ----- ----- ----- -- <u>운영위원회</u>가 -----

현 행	개 정 안
<u>영위원회의</u>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보수지침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다. 1. ~ 3. (생략) ②·③ (생략) 제35조(이사와 감사의 책임 등) ① (생략) ② <u>기획재정부장관은</u> 비상임이사(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감사(상임감사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제1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 및 제32조에 따른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비상임이사 및 감사를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고,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생략) 제36조(비상임이사와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 ①<u>기획</u>	----- ----- -----.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35조(이사와 감사의 책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재정경제부장관은</u> ----- ----- ----- ----- ----- ----- ----- ----- ----- -----. ③ (현행과 같음) 제36조(비상임이사와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 ①<u>운영</u>

현 행	개 정 안
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와 감사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위원회는 ----- ----- ----- -----.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그 실적이 저조한 비상임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 ----- ----- ----- ----- ----- -----.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무수행실적의 평가 기준과 방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③----- ----- ----- 거쳐 -----.
제39조(회계원칙 등) ① (생략)	제39조(회계원칙 등) ① (현행과 같음)
②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하 “계약질서위반행위”라 한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2	②----- ----- ----- ----- ----- -----

현행	개정안
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정당업자가 <u>기획재정부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내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부정당업자의 계약질서위반행위가 예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제여건 변화에 기인하는 등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로서 <u>기획재정부령</u>으로 정하는 경우: 계약질서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u>기획재정부령</u>으로 정하는 금액 2.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u>기획재</u>	----- -----. ----- ----- ----- <u>재정경</u> <u>제부령</u>----- ----- ----- -----. 1. ----- ----- ----- ----- <u>재정경제부</u> <u>령으로 정하는 경우</u> ----- ----- ----- ----- -- <u>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u> <u>금액</u> 2. ----- ----- ----- <u>재정경</u>

현 행	개 정 안
<u>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계약질서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u>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u></u>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계처리의 원칙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기획재정부령</u>으로 정한다. 제39조의2(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매년 해당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이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후 6월 30일까지 <u>기획재정부 장관과</u>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② (생략)	<u>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u> --- ----- ----- ----- ----- ----- <u>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u> ③----- ----- ----- -- <u>재정경제부령</u>-----. 제39조의2(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 ----- ----- ----- ----- ----- ----- - <u>재정경제부장관과</u> ----- ----- -.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③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기관(이하 이 항에서 “대상기관”이라 한다)의 경영환경·경제여건 및 국가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u>기획재정부장관</u>은 공기업인 대상기관의 장에게, 주무기관의 장은 준정부기관인 대상기관의 장에게 각각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생략) 제40조(예산의 편성) ① ~ ⑥ (생략) ⑦공기업·준정부기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u>기획재정부장관</u>, 주무기관의 장 및 감사원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단서에 따라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본다. ⑧ (생략) 제42조(운영계획의 수립) ①·②	③ ----- ----- ----- ----- 재정경제부장관은 ----- ----- ----- ----- ----- --. ④ (현행과 같음) 제40조(예산의 편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 <u>운영위원회</u>----- ----- ----- ----- ----- --. ⑧ (현행과 같음) 제42조(운영계획의 수립) ①·②

현행	개정안
(생략) ③공기업·준정부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그 회계연도의 운영계획을 기획재정부장관(공기업의 경우에 한정한다)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4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이 확정된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결산서의 제출) ① (생략) ②공기업은 <u>기획재정부장관에게</u>, 준정부기관은 주무기관의 장에게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다음 각 호의 결산서를 각각 제출하고, 4월 10일까지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총회나 출자자총회 등 사원총회가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에는 사원총회에서 결산을 의결·확정한다. 1. 2. (생략) ③<u>기획재정부장관과</u> 주무기관	(현행과 같음) ③----- ----- ----- <u>운영위원회(공기업의 경우에 한정한다)와</u> ----- ----- -----. 제43조(결산서의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u>재정경제부장관에게</u> ----- ----- ----- ----- -----. 1. 2. (현행과 같음) ③<u>재정경제부장관</u>-----

현행	개정안
의 장은 매년 5월 15일까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서와 그 밖에 필요한 서류(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등”이라 한다)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결산서등을 제출받은 감사원은 그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감사원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인과 그 밖에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서등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7월 10일까지 <u>기획재정부장관</u>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생략) ⑥ <u>기획재정부장관</u>은 제3항에 따른 결산서등에 제4항에 따른 감사원의 검사 결과를 첨부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7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생략) 제43조의2(공기업의 자본금 전입 협의 등) ① 공기업은 이익준	----- ----- ----- ----- -----. ④ ----- ----- ----- ----- ----- ----- ----- <u>재정경제부장관</u>----- -----. ⑤ (현행과 같음) ⑥ <u>재정경제부장관</u>----- ----- ----- -----. ⑦ (현행과 같음) 제43조의2(공기업의 자본금 전입 협의 등) ① -----

현행	개정안
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45조(출자의 방법) 정부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u>기획재정부장관</u> 이 그 납입시기와 방법을 정하여 이를 시행한다.	제45조(출자의 방법) ----- ----- ----- <u>재정경제부장관</u> ----- -----.
제46조(경영목표의 수립) ①기관장은 사업내용과 경영환경,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 후 매년 10월 31일까지 <u>기획재정부장관</u> 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경영목표의 수립) ①----- ----- ----- ----- ----- ----- ----- <u>윤</u> ----- <u>영위원회</u> 와 ----- -----.
②기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변경지정은 제외한다)된 해에는 지정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를 포함한 3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②----- ----- ----- ----- ----- -----

현 행	개 정 안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 후 이를 <u>기획재정부장관과</u> 주 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관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된 경영목표를 변경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 후 지체 없이 <u>기획재정부장관과</u>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 환경·경제여건 및 국가정책방 향 등을 고려하여 <u>기획재정부 장관은</u> 공기업의 장에게, 주무 기관의 장은 준정부기관의 장 에게 각각 경영목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47조(경영실적 등의 보고) ①공 기업·준정부기관은 매년 3월 20일까지 전년도 경영실적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경영실적 보고서”라 한다)와 제31조제3 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 관장이 체결한 계약의 이행에	----- <u>운영</u> <u>위원회와</u> ----- -----. ③----- ----- ----- ----- -- <u>운영위원회와</u> ----- -----. ④----- ----- ----- <u>운영위원회는</u> ----- ----- ----- --. 제47조(경영실적 등의 보고) ①- ----- ----- ----- ----- ----- -----

현행	개정안
의 조치 등을 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u>기획재정부 장관</u>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감사,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또는 기관장이 관련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하였다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감사,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또는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기준과 방법은 <u>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u> 정하되,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1. ~ 7. (생략) ⑥ <u>기획재정부장관은</u>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효율적인 수행과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인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이하 “경	----- <u>재정경제부장관</u> ----- ----- ----- ----- ----- ----- ----- -----. ⑤ ----- ----- <u>운영위원회가</u> <u>심의·의결을 거쳐</u> ----- ----- ----- ----- -----. 1. ~ 7. (현행과 같음) ⑥ <u>운영위원회는</u> ----- ----- ----- ----- ----- -----

현 행	개 정 안
영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⑦기획재정부장관은 <u>운영위원회</u> 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6월 20일까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마치고, 그 결과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⑦ <u>운영위원회</u> 는 ----- ----- ----- ----- ----- --.
⑧기획재정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u>대하여 운영위원회의</u> 심의·의결을 거쳐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기관장·상임이사의 임명권자에게 그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⑧ <u>운영위원회</u> 는 ----- ----- ----- -- <u>대하여</u> ----- ----- ----- ----- -----.
⑨ <u>기획재정부장관</u> 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인건비 과다편성 및 제50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침 위반으로 경영부실을 초래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는 <u>운영위원회의</u> 심의·의결을 거쳐 향후 경영책임성 확보 및 경영개선을 위	⑨ <u>운영위원회</u> 는 ----- ----- ----- ----- ----- ----- ----- <u>심의·의결</u> ----- ----- -----

현 행	개 정 안
하여 필요한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 등을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⑩ (생 략) 제49조(연차보고서의 작성) <u>기획재정부장관</u>은 매년 경영실적보고서와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상황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제50조(경영지침) ①<u>기획재정부장관</u>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상적 사항과 <u>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u>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침(이하 “경영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그 밖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u>기획재정부장관</u>이 필요하다고	----- -----. ⑩ (현행과 같음) 제49조(연차보고서의 작성) <u>운영위원회</u>는 ----- ----- ----- ----- -----. 제50조(경영지침) ①<u>운영위원회</u>는 ----- ----- <u>관련하</u> <u>여</u> ----- ----- ----- ----- -----. 1.·2. (현행과 같음) 3. ----- ----- <u>운영위원회</u>가 -----

현 행	개 정 안
인정하는 사항	-----
②공기업·준정부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과 윤리경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 정책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지침에 관한 의견을 <u>기획재정부장관에게</u> 제시할 수 있다.	②----- ----- ----- ----- ----- ----- <u>운영위원회</u> <u>회에</u> -----.
제51조(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 ① <u>기획재정부장관과</u> 주무기관의 장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자율적 운영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그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에 한정하여 감독한다.	제51조(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 ① <u>운영위원회와</u> ----- ----- ----- ----- ----- ----- -----.
② <u>기획재정부장관은</u> 공기업의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을 감독한다.	② <u>운영위원회는</u>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u>기획재정부장관과</u> 주무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감독의 적정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④ <u>운영위원회와</u> ----- ----- ----- -----

현행	개정안
에 따라 점검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1조의2(출연·출자기관의 설립 등 협의)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출연·출자기관을 설립하거나 다른 법인에 출연·출자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기관의 장 및 <u>기획재정부장관</u>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협의를 준하는 절차를 이미 수행하였거나 금융을 다루는 공공기관이 출자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생략) 제52조의2(감사결과 등의 국회 제출) ① (생략) ② <u>기획재정부장관</u>은 제36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감사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직무수행 실적 평가 결과를 국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의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	----- ----- -----. 제51조의2(출연·출자기관의 설립 등 협의) ① ----- ----- ----- ----- <u>운영위원회와</u> -----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52조의2(감사결과 등의 국회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u>운영위원회는</u> ----- ----- ----- ----- -----. 제52조의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

현 행	개 정 안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 ·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운영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명된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2조의4(채용비위 행위자 명단 공개) ① <u>기획재정부장관</u>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비위행위 중 채용비위 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 된 경우로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 운 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인적사항 및 비위행위 사실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52조의5(채용비위 관련자 합격 취소 등) ① <u>기획재정부장관</u>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 관의 임원이 비위행위 중 채용 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채용비위로	----- ----. ----- ----- ----- ----- ----- -----. 제52조의4(채용비위 행위자 명단 공개) ① <u>운영위원회</u> ----- ----- ----- ----- ----- -----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52조의5(채용비위 관련자 합격 취소 등) ① <u>운영위원회</u> ----- ----- ----- ----- -----

현 행	개 정 안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합격·승진·임용의 취소 또는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이하 “합격취소등”이라 한다)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심의·의결을 하기 전에 그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생략) 제52조의6(인사감사 등) ① <u>기획재정부장관</u>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비위행위 중 채용비위의 근절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인사운영의 적정성을 감사(이하 이 조에서 “인사감사”라 한다)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u>기획재정부장관</u>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인사감사 결과 위	----- ----- ----- ----- -----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52조의6(인사감사 등) ① <u>운영위원회</u> ----- ----- ----- ----- ----- ----- ----- -----. ② <u>운영위원회</u> ----- -----

현 행	개 정 안
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是正)과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즉시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u>기획재정부 장관</u> 또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 ----- -----. ③ ----- ----- ----- ----- <u>운영위원회</u> ----- ----- -----.

문 의 처
02)6788-5157